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4. 5. 17.>

법인 설립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일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법 인	명칭	전화번호
	소재지	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국가유산청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설립발기인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·약력을 적은 서류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) 1부 2.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. 재산목록(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)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.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.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·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. 창립총회 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1부 ※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(건물)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→ 접 수 → 확 인 → 결 재 → 허가증 작성 → 허가증 발급

신청인 처리기관 : 문화체육관광부, 국가유산청, 시·도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